

의안번호	2218281
의 퇴 인	박해철의원
회 답 일	2026.6.17.
추계번호	26D21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 (인구감소지역등 지정)	현행법 제2조제12호 ¹⁾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제2조제12호의2 ²⁾ 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하는 경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의2 (인구감소지역등 지정)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함)을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구수

1) 현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현행법 제2조(정의)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하여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등 시책을 추진(제21조³⁾)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2조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이 추가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개요

1. 지정 개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⁵⁾」에 근거하여 229개 지방정부(226개 시·군·구, 세종시,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함
- 최초 지정('21.) 당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수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
※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추진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2. 주요 지원 사항

- (기금 배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광역 25%, 기초 75%)⁶⁾
- (특례 부여)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른 보육·의료·주거 등 45개 행정 특례 마련 및 세컨드홈 세제혜택,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등
- (기본계획) 5개년 단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상 체계적 지원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3) **현행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4) **현행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에 포함될 지역을 예측할 수 없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는 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향후 추가될 행정동 단위의 인구감소지역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2024.2.27. 시행)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참고 2]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2026.1.1. 시행)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광역시(2)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1)	동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1)	익산시
경상북도(2)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2)	사천시, 통영시